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37

발의연월일: 2020. 8. 5.

발 의 자:정점식·이종성·한무경

서일준・추경호・조수진

이만희 · 김희국 · 하영제

서정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각각 2021년 12월 31일 및 2020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에 대한 면세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한·EU, 한·미 FTA 체결 이후 농어민들이 입고 있는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농어민들의 소득 보전과 농어업관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특례를 일정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일몰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을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 -----석유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 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석 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하는 것에 한하여-----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 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 <후단 삭제>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 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 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② (생 략) ② ~ ② (현행과 같음)